



상주시의회 공고 제2022-3호

「상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6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8일

상 주 시 의 회 의 장



「상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상주시의 정책 수립 및 추진 시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시정 신뢰성 확보는 물론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대상 및 범위,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1조 ~ 제3조)

나. 기본원칙,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공공갈등영향분석을 규정함
(안 제4조 ~ 제7조)

다. 공공갈등관리 심의위원회, 공공갈등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제18조)

라.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전문가 등의 활용, 수당 등,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 ~ 제2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2월 3일까지 상주시의회의장(참조: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개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ywnine@korea.kr

2) 주 소: (우37183) 상주시 중앙로 111, 상주시의회

3) 팩 스: 054-535-9854 (발송 후 수신여부 확인 요망)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054-537-783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상주시의회 홈페이지(<https://www.sangjucouncil.go.kr> → 의회소식 → 공지사항)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자치법규안 내용	의견	비고